

## 보험전문업 등록 후 유의사항

손해사정업(보험계리업) 업무수행 시 보험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, 보험업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7조에 의해 손해사정업(보험계리업)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주일 내 그 변경사항을 우리원에 신고

□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된 자는 1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(보험업법 시행령 제93조 및 제98조)

□ 전문업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요망 (fax 02-3145-7489)

\* 전문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[업무자료-보험업무-보험업무자료-보험전문인(업)/보험중개사] 참조

\* 보험 관련법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[법규정보-금융감독법규-보험관련법규-보험업법 및 관련규정] 참조

\* 서류 우편제출시

(우 07321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,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

① **등록사항의 변경** :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주일 내 신고 (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7조)

○ **대표자 변경(법인)** : 등록사항 변경신고서, 등기부등본, 이력서, 신분증 사본, 전문업등록증(이하 '업등록증'이라 함) 원본 (등기상 임원 변경시 업등록증 제출 불요)

○ **영위종목 변경** :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법인의 경우 법인직인 날인), 종목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업등록증 원본(종목을 추가\* 하는 경우 전문인등록증 사본도 포함)

\* 개인업의 경우 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록증으로만 업종(추가)변경 신청이 가능

○ **상호 변경** : 등록사항 변경신고서, 업등록증 원본,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

○ **주소 변경** : 등록사항 변경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(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), 업등록증 원본

## ② 고용 손해사정사(보험계리사) 변경 시

- (입사) 손해사정사(보험계리사) 변경신고서, 이력서(칼라사진, 서명 또는 날인, 등록기준지 필수), 신분증 사본, 전문인등록증 사본 등
  - (퇴사) 손해사정사(보험계리사) 변경신고서(등기임원이 퇴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할 것)
- ☞ 법인의 경우 고용 손해사정사(보험계리사)가 2인 이상이며, 법인손해사정업자의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상근하여야 함

기 등록된 영위종목의 고용손해사정사가 1명도 없게 되는 경우 동종목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영위종목 변경을 하여야 함

## ③ 법인의 지점(사무소) 설치 신고

- 각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시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함
  -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도로명주소 필수 기재, 법인직인 날인), 지점(사무소)현황\*, 지점대표자, 지점인원, 지점손해사정사 등의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
- \* 지점명칭, 설립일, 사업장소재지, 연락처, 손해사정 영위종목, 지점장, 고용손해사정사, 임대차계약서사본 등

### □ 손해배상보장금의 예탁(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)

- 기 제출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, 갱신후 증권 원본을 우리원에 제출
- 보험기간은 3년 이상(만료일은 6월 30일), 500만원 이상

→ 주소(연락처 포함)등 변경신고 누락으로 우리원과 연락 두절되고 손해배상보장금이 예탁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

### □ 업무폐지, 파산 등 기타사유로 손해사정업(보험계리업)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'폐업등 신고서, 폐업사실증명원, 업등록증 원본'을 우리 원에 제출

## □ 손해사정사 보조인 신고

-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음
-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업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(한국손해사정사회)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(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신고)

→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자격요건 및 신고 절차 등은 한국손해사정사회 ([www.kicaa.or.kr](http://www.kicaa.or.kr), 02-712-9112)에 문의

## □ 면허세 납부

- 보험전문업 등록후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관청\*에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\* 사무실 주소가 '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'인 경우 해당 구청 (영등포구청)에 면허세 납부를 문의